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영향으로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 내에 일본에 재입국하기 어려운 영주자 여러분께 (2020년 6월 29일 이후)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영향으로 '재입국 허가' 또는 '간소화된 재입국 허가'의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하기 어려운 영주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방법으로 다시 입국(※1)하실 수 있으니 거주지의 일본국 대사관·총영사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.

- ①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, 또는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하기 어려운 경우
거주지의 일본국 대사관·총영사관에서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

[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장 1년간 입니다.]

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새 유효기간 내에 일본에 재입국하여 주십시오. 연장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②의 방법으로 입국하여 주십시오.

- ② '간소화된 재입국 허가'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(①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.)

['재입국 허가' 또는 '간소화된 재입국 허가'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입국 제한이 해제된 날(※2)의 1개월 후까지인 분이 대상입니다.]

입국 제한이 해제된 날의 6개월 후까지 거주지의 일본국 대사관·총영사관에 '정주자' 사증(비자)을 신청하여 주십시오.

사증(비자)을 발급받으면 입국할 때 일본 공항에서 '영주자'로서 새로 입국하기 위한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.

※1 본 조치의 대상인 분이더라도 체재 중인 국가·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

이 해제되지 않으면 --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-- 일본 입국이 허가되지 않습니다.

아래의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.

<http://www.moj.go.jp/content/001327505.pdf>

※2 입국 제한이 해제된 날이란 체재 중인 국가·지역에 대한 상륙 거부 및 이미 발급된 사증(비자)의 효력 정지 둘 다 해제된 날을 가리킵니다.

각 국가·지역의 입국 제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.

http://www.moj.go.jp/nyuukokukanri/kouhou/nyuukokukanri01_00154.html

※3 ① 및 ②의 수속에 필요한 서류에 관해서는 아래의 외무성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.

https://www.mofa.go.jp/about/emb_cons/mofaserv.html